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센터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이용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9조(이용계약내용) ① 센터와 이용자 간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센터와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급여계약서(그 명칭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라고 하고, 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2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이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인정유효기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의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센터와 이용자 간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의 중단, 해제(해지) 등 기타사항은 전화,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이며, 그 비용의 일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되는 본인부담금이다.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 금액을 이용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표준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